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삼성SDI 주식회사(이하 회사라 칭함)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일층 제고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에 의거 설치하기로 하고 그 구성, 운영 및 권한, 책임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2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 5 인 이하의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
<개정 2026. 7.30.>

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중에서 선출되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.
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
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 조 (해임)

위원의 해임은 이사 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서 가능하며, 이사회는 해임,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(제 2 조 제 2 항의 구성에 미달할 경우) 지체 없이 총원을 해야 한다.

다만, 신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,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 5 조 (위원회)

위원회는 분기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, 기타 발송 및 착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6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, 기타 발송 및 착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장 권한 및 책임

제 8 조 (권한)

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.

- ①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
 1.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.

2. 위원회의 사전 심의권

- 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『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』상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는 사전 심의한다.
<개정 2023.10.26> <시행 2024.1.1>
- 2) 1 목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거래 중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는 사전 심의한다. <개정 2019. 2.19.>
- ②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
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 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
- ③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
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의무)

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.

- ① 선관주의 의무
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
내부거래위원회 간사로부터 분기 1 회 이상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하며,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 작성 의무
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의사록에는 점검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점검을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10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결의일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1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 · 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2 조 (경비)
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3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제 14 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은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3 조 제 1 항 개정 규정은 2026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

서기 2012 년 3 월 26 일 제정

서기 2019 년 2 월 19 일 개정

서기 2023 년 10 월 26 일 개정

서기 2026 년 7 월 30 일 개정